

[별표 2] <개정 2009.7.7>

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(제17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과징금 금액
1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 제1호	50만원
2. 법 제17조제2항(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 제2호	50만원
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(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)	법 제24조제1항 제3호	50만원
4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(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)	법 제24조제1항 제4호	50만원

비고: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